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720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방식을 정률제로 변경	3

I. 개요

1.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7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9.
- (3) 회 부 일 : 2024. 12.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정률로 산정하고 있으나 재산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사용하는 등급제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등급제는 낮은 등급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을 거치면서 정률로 개편된 소득보험료의 산정방식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제2호, 제72조,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방식을 정률제로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재산수준에 따른 등급별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사용하는 등급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정률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생략) 1. ~ 4. (생략)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u>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u> 5의2.·6. (생략) ② ~ ⑦ (생략) 제69조(보험료) ① ~ ④ (생략)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u>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u> 5의2.·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9조(보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1. -----

현행	개정안
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u>보험료율</u>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u>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u>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생략) 제72조(<u>재산보험료부과점수</u>)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 산정 시 제외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 -----<u>소득보험료율</u>----- ----- 2. ----- <u>재산월액</u>----- ----- <u>재산보험료율</u>----- -----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u>재산월액</u>) ① ----- ----- <u>재산월액은</u> ----- ----- ----- ----- ----- ----- ----- ----- ----- ----- <u>재산월액</u> -----. 1. 2. (현행과 같음) ② ----- <u>재산월액</u>의 ----- ----- ----- -----

현행	개정안
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u>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u> 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재 <u>산월액</u> ----- ----- ----- ----- -----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u>재산월액</u> ----- ----- ----- -----.
제73조(보험료를 등) ①·② (생략)	제73조(보험료를 등) ①·② (현재와 같음)
③ 지역가입자의 <u>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u> 은 심의	③ ----- <u>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u> -----

현행	개정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생략)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재산월액을</u>----- -----. ③ ----- ----- ----- <u>재산월액</u>----- ----- ----- ----- ----- ----- ----- <u>재</u> <u>산월액을</u> -----. 1. 2.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현행	개정안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① ----- ----- <u>재산월액</u> -----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① 세대별 소득월액(연간 소득 x 1/12 x 소득평가율²⁾)에 보험료율(7.09%)을 곱한 금액과 ② 세대별로 산정된 재산금액³⁾에 대한 등급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됨.

- 참고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정률제를 도입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별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등급제를 사용해왔으며⁴⁾,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중증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

2)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근로·연금 소득(50%)

3)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1억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1.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4)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소득과악이 용이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과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부과방식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정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재산보험료의 경우 계속해서 등급제를 사용하고 있음.⁵⁾

<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비교 >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2조·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제4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부과기준) 월별보험료 = ①세대가 보유한 소득+②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 x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①소득(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소득* x 1/12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7.09%)
 - * 필요경비공제를 제외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 소득), 비과세 소득 제외
 - **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근로·연금 소득(50%) 반영
 - ②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1억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x 점수당 금액(208.4원)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 = ①보수월액 보험료 + ②보수 외 소득보험료
 - ①보수월액보험료 = 연 보수 x 1/12 x 보험료율(7.09%, 가입자 부담 3.545%, 가입자(50%)·사용자(50%) 부담
 - ②보수 외 소득(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의 소득 - 2,000만 원) x 1/12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7.09%), 가입자(100%) 부담
 - * (소득)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근로·연금 소득(50%) 반영

5) 참고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과방식 개편과정에서 직장·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소득보험료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동일하게 정률제로 규정하였으나,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공제금액 확대(5천만원→1억원, 2024년 2월) 등을 통해 재산보험료를 축소해나가는 방식으로 개편한 바 있음. 다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의 역진성 문제 및 저재산가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재산보험료 부과방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 관련 등급기준”에 따르면 등급별 기준 재산금액 증가율 대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증가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바, 재산금액이 증가하여 등급이 높아질수록 재산 1만원 당 보험료는 오히려 낮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⁶⁾

< 등급제에 따른 역진성 문제 발생 예시 >

◆ 재산등급별 재산 1만원 당 보험료 금액 예시

- * (재산 1등급: 재산과표 450만원 이하) 재산과표 225만 원인 경우, 보험료 4,580원($22\text{점}(\text{재산부과점수}) \times 208.4\text{원}$)
=> 1만원 당 보험료는 20.36원($4,580/225 = \text{약 } 20.36\text{원}$)
- * (재산 30등급: 재산과표 3억 4,900만원 ~ 3억 8,800만원) 재산과표 3억 6,850만원인 경우, 보험료 15만 2,340원($731\text{점} \times 208.4\text{원}$)
=> 1만원 당 보험료는 4.13원($152,340/36,850 = \text{약 } 4.13\text{원}$)
- * (재산 60등급: 재산과표 77억 8,124만원 초과) 재산과표 77억 8,125만원인 경우, 보험료 48만 7,860원($2,341\text{점} \times 208.4\text{원}$)
=> 1만원 당 보험료는 0.63원($487,860/778,125 = \text{약 } 0.63\text{원}$)

□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6)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의 역진성 문제 관련, 재산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보험료율을 더 낮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도입할 경우 재산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다해질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산보험료가 없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있음. 나영균·문용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역진성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제31권3호, 한국보건행정학회, 2021.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근로·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 없이 부동산 등의 재산만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정률제 시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재산금액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현재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검토’ 등을 위한 정책연구(건보공단)를 추진할 계획으로, 연구결과(2025년말 완료예정)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낮은 재산등급에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을 보완하고 소득보험료와의 산정방식 일원화로 가입자간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성 있는 부과체제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재산보험료 정률부과방식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보

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 인상에 따른 법·제도 수용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사전에 실시하고, 충분한 정책적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3

[참고자료]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 관련 등급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